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갑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39
----------	------

발의년월일 : 2019. 10. .

발 의 의 원 : 박갑상 의원, 강성환 의원
김성태 의원, 김혜정 의원
이영애 의원, 이태손 의원
황순자 의원

1. 제안이유

- 부산, 인천, 경남창원 등 타 시·도에서 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를 2020년 말까지 연장함으로써 대구시도 리스차량 이탈 방지를 통한 세수 확보 및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를 2020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자동차 신규등록(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대형 제외) 및 이전등록의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제3조제1항 단서)
- 나.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사항 부칙에 반영함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제1항 단서)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도시철도법」, 같은 법 시행령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p> <p>①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에서 정한 매입대상 및 상한액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 신규등록(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대형 제외) 및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u>2019년 12월 31일까지</u> 매입을 면제한다.</p> <p>1.·2.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p> <p>-----</p> <p>-----</p> <p>-----</p> <p>-----</p> <p>-----</p> <p>-----</p> <p>-----</p> <p>----- <u>2020년 12월 31일까지</u>-----.</p> <p>1.·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도시철도법]

제21조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건설도급계약(建設都給契約)을 체결하는 자
4. 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와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필요한 건설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금액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 법 제21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2]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의 범위(제14조 관련)

매입 대상	매입 금액의 범위
<p>1. 자동차등록(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을 신청하는 자</p> <p>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명 이상인 자동차는 제외한다)</p> <p>1) 신규등록</p> <p>가)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p> <p>(1) 소형(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p> <p>(2) 중형(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p> <p>(3) 대형(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p> <p>나)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외의 자동차</p> <p>(1) 소형(배기량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p> <p>(2) 중형(배기량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p> <p>(3) 대형(배기량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p> <p>(4) 다목적형</p> <p>2) 이전등록</p> <p>(이 하 생 략)</p>	<p>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9</p> <p>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2</p> <p>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0</p> <p>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9</p> <p>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2</p> <p>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20</p> <p>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p> <p>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6</p>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제3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금액) ①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에서 정한 매입대상 및 상한액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 신규등록(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대형 제외) 및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을 면제한다.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승차정원 7명 이상인 자동차 제외)

가. 신규등록

(1)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의 소형, 중형 : 취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2)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의 대형 : 취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

(3) 다목적형 : 취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나. 이전등록 : 취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

2. 각종 건설공사의 도시철도채권 매입금액은 건설공사도급계약금액의 100분의 5로 하며, 도급계약이 1,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건설 공사로 인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②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시행령」 및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공채의 매입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신규등록(2,000cc이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제외) 및 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을 면제한다.

1. 시, 구·군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2. 시, 구·군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시, 구·군 또는 시, 구·군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시와 구·군이 다른 조례에 의하여 공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채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이 연도중에 전부 매출되었을 경우에는 그 연도의 잔여기간 동안 이 조례에 의한 공채를 매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채매입대상자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채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대상 중 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⑥제1항의 공채매입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